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2020. 6. 23.



목 차


I .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II .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1
1. 여행업, 국내여행업, 해외여행업	12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13
3. 휴양콘도미니엄업	15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6
5. 야영장업	18
6. 관광공연장업	20
7. 국제회의시설업	22
8. 국제회의기획업	24
9. 외국인환자 유치업	25
10. 카지노업	26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7
12. 기타유원시설업	29
13. 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30
14. 관광식당업	31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33
16. 관광순환버스업	35
17. 관광펜션업	37
18. 관광궤도업	39
19. 한옥체험업	40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42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4
22. 관광사진업	45
23. 관광유람선업	46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48
25. 호텔리츠	50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1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52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53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54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55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56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7
33. 자동차대여사업	59
34. 수상·수중레저사업	60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62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63
37. 관광지원서비스업	64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66

III. 용자 업무처리 안내 및 용자신청서

1. 관광협회 용자취급 안내문	68
2. 관광기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	70
3. 금융기관 용자취급 안내문	73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76
5. 융자신청서	80
6.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87
IV. 질의응답 사례(Q&A)	88
V. 참고자료	96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97
2.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100



I.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용자 규모 : 1,000억원 이내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2. 용자 대상 업종, 용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 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6~7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빌딩) ○ 시·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 자금	야영장업	○ 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시·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 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림빌딩)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테일오피스텔 1316호)		
보세판매장	○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시설 자금	<p>○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p> <p>※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p> <p>*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p> <p>< ※ 취급은행별 문의처 ></p> <p>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7)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683)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615)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KEB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34)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p>	<p>○ 신축, 증축, 구입 -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p> <p>**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p> <p>○ 개보수 -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p> <p>○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p>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용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용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용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용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용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용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20.6.24.(수) ~ 7.10.(금) 4분기 : 2020.8.31.(월) ~ 9.11.(금)	2020.6.24.(수) ~ 11.13.(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용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3분기 : 2020.7.24.(금) 4분기 : 2020.9.25.(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용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20.7.27.(월) ~ 8.21.(금) 4분기 : 2020.9.28.(월) ~ 10.30.(금)	2020.7.8.(수) ~ 12.11.(금)
용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p>☞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p> <p>☞ 용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용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p>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0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용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중도 변경 불가) 다만, 용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용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 용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0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 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0.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0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크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용자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용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용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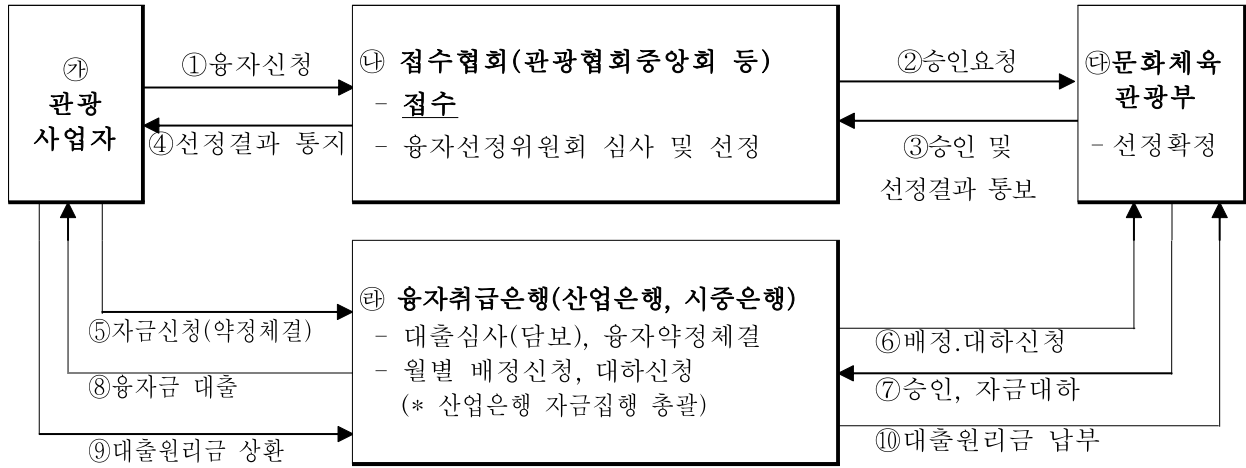
다. 공통사항

○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용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용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용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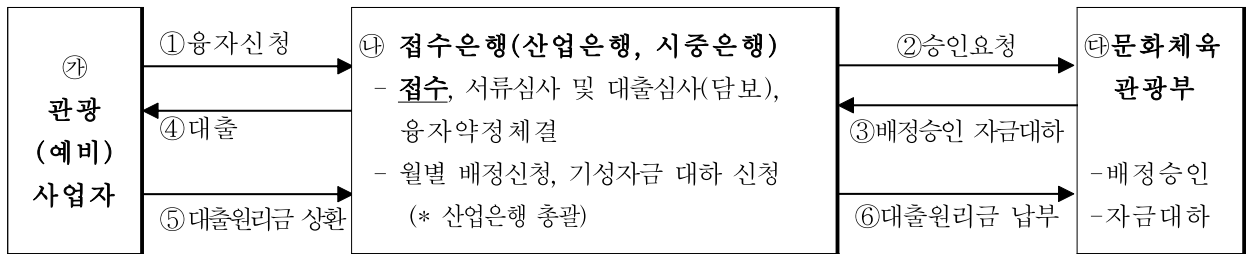
○ 특급호텔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용자절차

가. 운영자금



나. 시설자금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용자신청

-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용자 지원 신청
-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용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용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용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 (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 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 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0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하반기(특별용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용자받은 금액의 총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용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용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용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해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해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5. 야영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6. 관광공연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7. 국제회의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8. 국제회의기획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9. 외국인환자 유치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용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0. 카지노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 · 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2. 기타유원시설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14. 관광식당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 관광식당을 신축·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 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6. 관광순환버스업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도지사)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7. 관광펜션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8. 관광궤도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군·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허가증 사본

19. 한옥체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2. 관광사진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3. 관광유람선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4.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5. 호텔리츠

□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
 - 해당 용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 ※ 호텔리츠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용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용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
-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미술관을 운영중인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군·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3. 자동차대여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 대폐차, 양도하는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4. 수상·수중레저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 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 권역별 연간 30억원(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합산) 한도, '18~21년 한시적 지원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축제·행사계획서
-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용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불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용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7. 관광지원서비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항공기 매매계약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 항공기 구매자금은 지방공항 취항 저비용 항공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Ⅲ. 용자업무처리 안내 및 용자신청서

▶▶ 1. 관광협회 용자취급 안내문

1. 서류심사

□ 용자선정위원회 구성

◦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참조

□ 용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보관·계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 관광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 시·도 관광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다만, 시·도 관광협회에서 접수된 용자신청 서류는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송한다.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시·도관광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다만, 시·도 관광협회에서 접수된 용자신청 서류는 한국호텔업협회에 이송한다.

* 접수기관은 용자신청 호텔의 등급 및 가장 최근 등급결정일을 확인하여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명을 선정 총괄표에 표기하고 미등급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MICE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접수 ⇒ 용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보세판매장 : 한국면세점협회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 다만, 한국면세점협회에서 접수된 융자신청 서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이송한다.

<※ 유의 사항>

- 융자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상·하한선의 설정,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업체별 차등 배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 특히, 업체별 자금소요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

2. 업무안내

-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3. 사후관리

-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
- 융자사업자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은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회가 이를 검토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 2.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용자대상 업체를 심사·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 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면세점협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용자심사·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용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자심사·선정의 원칙) ① 용자심사·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 업종별 협회등의 용자심사·선정 업무의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용자심사·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용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용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중앙회에 비상설기구로 용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회가 각 협회등으로 부터 추천(3명이내)을 받아 3배수 이내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 중에서 10명의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이상 직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용자대상자 심사·선정 업무의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단, 간사는 연임할 수가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용자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제6조 (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인, 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직원 (사무국장급 이상) 각 1인, 관련업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중앙회 및 업종별로 각각 구성,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간사는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의 직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각 소위원회에 해당 업종별로 용자심사·선정기준, 용자대상자 심사·선정안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중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등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중앙회의 경비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절 용자심사·선정 기준

제8조 (심사·선정기준의 마련) 용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용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업종별 상·하한선의 설정)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용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 배정 한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기타 업종별 이슈, 소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용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업체별 차등배분)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한 사항) 용자선정위원회의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용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

제14조 (행정사항) 위원회는 용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용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용자신청액, 선정액, 집행액, 미상환액 등 용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등에 통보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 3. 금융기관 용자취급 안내문

1. 서류심사 등

- 용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용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용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용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용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2. 업무안내

- 정확한 용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 용자취급은행은 용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용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용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용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구분	최소단위	비고
대하 / 전대신청	백만원	용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기한전 상환	백만원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용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용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용자금을 회수함
 - 용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용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용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 용자금 사용자는 용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용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용자취급은행은 용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3. 사후관리

- 월별 용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용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용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용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용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용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용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용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용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용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용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용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용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용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용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용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하반기(특별용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용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용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용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용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용자 선정액의 60% 이내에서만 집행
- 용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거래은행의 변경은 용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용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월별 용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 * 용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당해 용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용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 융자금의 자금배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하 '총괄은행')과 융자취급은행(이하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정원칙 및 절차) ① 융자신청 업체에 대한 기금 대여금의 배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는 사회·경제적 이슈 및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융자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업체별로 각각 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시달할 수가 있다.

② 운영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선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융자선정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확정하며, 이후 은행은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대하금액을 신청, 집행한다.

③ 시설자금은 은행이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여금을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기준에 의거 모든 기금 신청업체에 대해 대여금을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정기준)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규모, 융자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배정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다. 다만, 다음 반기 개시일까지 문체부가 배정기준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반기의 배정기준에 의한다.

제4조 (배정한도) 은행은 시설자금의 융자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월별 배정신청 등) ① 은행은 매월 초일(반기 융자지침 공고시에 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금 대여금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등을 정리한 '월별 배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익월 2영업일까지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은행은 각 융자신청 업체별로 융자신청서 및 행정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월별 배정승인서'(붙임2)를 총괄은행을 경유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한다.

③ 은행은 제2항에 의거 문체부가确定的한 개별 업체당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총괄은행을 경유,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이 개별 업체 당 배정액 대비 95% 미만으로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 “공기지연 등으로 △△업체 배정액의 85% 대하신청” 등 간략 기재)

④대여금의 대하 신청은 기성고 인정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6조 (대여금의 집행) ① 대여금은 당해연도 반기별 용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해 반기 내 배정액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운영자금을 집행하고, 이후 시설자금을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총괄은행의 자금 대하신청‘접수’순 및 월별 배정 신청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③ 문체부는 용자예산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배정률을 조정하여 시달하거나, 은행의 용자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의 중지, 배정신청 및 대하신청의 중단이나 연기, 배정액 및 대하계획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조정 등을 명할 수가 있다.

제7조 (대여금의 이월) ① 문체부는 용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용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집행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할 수가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광기금 용자 월별 배정 신청서(* 은행 양식)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규모)	업체명/대표/연락처	업종	소재지	은행명/지점	용자한도				배정신청액	대하신청 계획						비고	
					총소요자금	업체신청액	미상환액	신청한도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합계: 총 건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심사완료: 건 백만원																	
건설/중소	00	호텔	00	00	3,500	140	20	130	71.4	10	20	20	10	10	1.4	71.4	
<input type="checkbox"/> 심사중: 건 백만원																	
개보수/중견	△△	종합휴양	△△	△△	2,500	80	10	40	14.025	-	-	10	-	4.025	-	14.025	

<붙임2>

관광기금 용자 월별 배정 승인서(* 문체부 양식)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규모)	업체명/대표/연락처	업종	소재지	은행명/지점	용자한도				배정확정액	대하 계획						비고	
					총소요자금	신청액	미상환액	신청한도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input type="checkbox"/> 심사완료: 총 건 백만원																	
건설/중소	00	호텔	00	00	3,500	140	20	130	71.4	10	20	20	10	10	1.4	71.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 신청내용

- ① 신청횟수* : 1회(처음 신청) 2~4회 5회 이상
- ② 사업구분* : 건설 개보수 운영
- ③ 특이사항*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④ 신청업종* : _____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_____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용자 : 백만원 / 특별용자 : 백만원
-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20년 하반기 신청액			'20년 하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20년 상반기 미지급액 ³⁾	'20년 하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④					
	지원대상외 ⁴⁾ ⑤					
합 계 (④+⑤) = (⑥+⑦+⑧+⑨)						
조달 계획	관광기금 ⑥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⑦					
	자기 자금 ⑧					
	기타 자금 ⑨					

주3) '20.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0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보물건	담보가액	비고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구분	항목	검토결과	
		신청인	취급은행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	관광기금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으로 배정될 경우, 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착수 <input type="checkbox"/> 포기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input type="checkbox"/> 지연(월) <input type="checkbox"/> 지연안됨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담보제공 능력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관광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공사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산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6. 참고사항

- 취급은행 또는 협회에 용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용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용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용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용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용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요.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용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용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용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 ⑧ ①의 실 주소지
- ⑨ ③의 실 주소지, 용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해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케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용자와 특별용자를 구분하여 기재)
-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20.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0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0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0년 상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운영자금 용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 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용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정정 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용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용자금 집행내역 (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용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용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용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용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용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용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용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 6. 2020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0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IV. 질의응답 사례(Q&A)

Q1 관광기금 용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 A1**
- 관광기금 용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접수하고(연 2회 공고), 운영자금은 분기별(연 4회) 접수
 - 용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용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시설(건설·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운영자금은 8개 관광협회등 또는 지역 관광협회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용자지침 참고

Q2 용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 A2**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용자취급은행(시설자금)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운영자금)를 통하여 확인 가능

Q3 용자 신청절차는?

- A3**
- ① 관광기금 용자 신청
 -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처 등은 용자지침 참고
 - ② 서류 및 담보심사
 - 용자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용자선정위원회 개최(운영자금)
 - 자격요건, 신청금액, 예산 등을 확인하고 업체별 용자가능 최대금액 산출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 ③ 관광기금 용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 및 용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용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용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공고

Q4 개인의 용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A4 ◦ 용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용자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Q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용자신청이 가능한지?

A5 ◦ 용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Q6 용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A6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용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용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용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용자취급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Q7 용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A7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내 대출 가능

* 4P. '3. 용자접수 및 시행일정' 참고 바람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용자신청 가능
-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0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Q8 용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A8 ◦ 해당 반기내에 용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 용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용자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용자신청서 작성)
-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용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Q9 용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A9 ◦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Q10 용자 대출금리는?

A10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20년 2/4분기 : 2.25%)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다만, 용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용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Q11 토지,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융자지원 여부는?

A11 ◦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 시행사업에 한하여 토지매입비 지원

◦ 건물 매입자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 가능

- 관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건물(또는 시설)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자금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증축 및 개보수비의 일부로 간주). 단, 건물매입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은 당해 관광시설 계획면적(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부대시설 포함)의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하며(건물 연면적으로 계산), 매매계약 종료 후 6개월이내 증축 또는 개보수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함.

* 건물매입자금은 증축 및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기성고 지급 시 정산 지급한다.

* 예> 전체 건물연면적 100㎡(관광시설계획면적 20㎡, 기타용도 80㎡), 매입자금 100억, 총공사비 50억인 경우

☞ 건물매입자금 지원액 = 전체 건물매입자금 × 관광시설계획/건물연면적
= 100억 × 20% = 20억(총공사비의 50%이내, 25억이내 해당)

☞ 융자신청 : 총 70억 신청가능(공사비 50억 + 건물매입자금 20억)

※ 이 경우, 건물매입자금(20억)은 시설자금에 포함하여 신청(총 70억)하고, 반드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1반기에 한하여 신청, 지원함)

☞ 융자선정액 40억, 기성고 30억 인정 시 ⇒ 대출금액 40억(공사비 30억 + 건물매입자금 10억)

* 즉, 건물매입자금은 선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를 차감하여 지원(20억이내)

- 다만, 관광시설의 확충과 관계없는 단순한 건물 인수자금은 지원 불가

* 예> 기존 관광시설 매입자금 등

Q12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A12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
금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40억원	20억원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대기업, 중견기업 포함)은 중소기업의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Q13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A13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Q14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A14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
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Q15 용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A15 ① 용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용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용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용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16 용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A16 ◦ 신청 및 선정 후 용자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용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 용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취급은행과 협의 후 협회에 요청 하고, 협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

Q17 용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A1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Q18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 A18**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용자취급은행에 접수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용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용자금 회수

Q19 회원제 관광시설의 용자 지원범위는?


- A19**
- 공사 소요자금에서 용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용자 지원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용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용자금 회수

Q20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범위는?

- A20**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Q21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 A21**
- 용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 최초 용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V. 참고자료

▶▶▶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 관광지

(2020. 3월 기준)

시도	지정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5	기장도예촌, 용호씨사이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태종대, 해운대
인 천	2	마니산, 서포리
대 구	2	비슬산, 화원('19신규)
경 기	14	대성, 산장, 수동, 장흥, 용문산, 신륵사, 한탄강, 공릉, 임진각, 내리, 백운계곡, 산정호수, 소요산, 궁평
강 원	41	호반, 구곡폭포, 청평사, 간현, 옥계, 주문진, 연곡, 등명, 대관령 어흘리, 무릉계곡, 망상, 추암, 구문소,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장호, 맹방, 삼척해수욕장, 초당, 팔봉산, 흥천온천, 어답산, 유현문화, 고씨동굴, 영월온천, 마차탄광문화촌, 미탄마하생태, 화암, 아우라지, 고석정, 직탕, 광덕계곡, 후곡약수터, 내설악 용대, 방동약수터, 오토테마파크, 송지호, 삼포 문암, 화진포, 오색, 지경
충 북	22	세계무술공원, 충온온천, 능암온천, 충주호체험,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만남의광장, KBS촬영장, 속리산레저, 구룡산, 장계, 송호, 레인보우 힐링, 수옥정, 괴강, 무극, 천동, 다리안, 온달
충 남	25	천안종합휴양, 태조산, 곰나루, 마곡사, 마곡온천, 공주문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신정호, 아산온천, 간월도,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도, 구드레, 서동요역사, 금강하구둑, 춘장대해수욕장, 칠갑산도립온천, 남당, 예당, 덕산온천,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전 북	21	석정온천, 금강호, 은파, 김제온천, 벽골제, 남원, 모항, 변산해수욕장, 위도, 모악산, 금마, 미륵사지, 왕궁보석테마, 응포, 사선대, 오수의견, 방화동, 내장산리조트, 백제가요정읍사, 마이산회봉온천, 운일암반일암
전 남	28	대구면도요지, 곡성 도림사, 지리산온천, 나주호, 담양호, 회산연꽃방죽, 율포해수욕장, 한국차소리 문화공원, 불갑사, 성기동, 마한문화, 영산호 쌀문화 테마공원, 영암바둑테마파크, 신지명사십리, 장성호, 흥길동테마파크, 정남진우산도, 녹진, 아리랑마을, 해신장보고, 회동, 사포, 땅끝, 우수영,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대광해수욕장
경 북	32	경산온천, 고령부례, 문경온천, 문경상리, 오전약수, 다덕약수, 경천대, 문장대온천, 회상나루, 안동 하회, 예안현, 고래불, 장사해수욕장, 선비위, 문수, 부석사, 영주순흥, 풍기온천, 치산, 포리, 예천 삼강, 개척사, 울릉도, 백암온천, 성류굴, 의성탑산온천, 신화랑, 청도온천, 청도용암온천, 주왕산, 가산산성, 호미곶
경 남	21	거가대교, 장목, 가조, 수승대, 당항포, 송정, 표충사, 실안, 금서, 전통한방휴양, 중산, 벽계, 오목내, 부곡온천, 마금산온천, 도남, 목계, 농월정, 미송산, 합천보조댐, 합천호
제 주	15	제주남원, 돈내코, 수망, 미천굴, 토산, 표선, 곱지, 제주여성테마파크, 김녕해수욕장, 돌문화공원, 묘산봉, 봉개휴양림, 용머리, 함덕 해안, 협재 해안
합 계	228	전체 관광지 면적 합계 : 125,590,800m ²

○ 관광단지

(2020. 3월 기준)

자치단체	명칭	위치	지정면적(m)	사업시행자	단기지정	조성계획	
강원 (14)	고성군	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03-1번지 일원	900,742	(주)대명레저산업	'12.05.	'12.05.
	속초시	속초 설악화리조트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1번지 일원	1,314,100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	'10.08.	'10.08.
	양양군	양양 국제공항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2,448,198	(주)새서울레저	'15.12.	'15.12.
	원주시 (3)	원주 오크밸리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판대리 일원	11,356,278	(주)한솔개발	'95.03.	'96.02.
		원주 더네이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21번지 일원	1,444,086	(주)경안개발	'15.01.	'17.4(실효)
		원주 루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산239-1번지 일원	2,644,254	(주)지프러스	'17.04.	미수립
	춘천시 (2)	라비에벨(무릉도원)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홍천군 북방면 전차곡리 일원	4,843,796	(주)코오롱글로벌	'09.09.	'09.09.
		춘천 신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224번지 일원	1,694,696	(주)신영종합개발	'10.02.	'10.05.
	평창군 (3)	평창 휘닉스파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오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4,233,039	(주)휘닉스중앙	'98.10.	'99.03.
		평창 용평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6,219,204	(주)용평리조트	'01.02.	'04.03.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4,837,015	강원도개발공사	'05.09.	'06.04.
	홍천군	홍천 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번지 일원	7,052,490	(주)대명레저산업	'08.11.	'11.01.
	횡성군 (2)	횡성 웰리힐리파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0,709	(주)신안종합리조트	'05.06.	'12.07.
		횡성 드림마운틴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일원	1,796,574	(주)미지앤리조트	'16.03.	'17.06.
경기 (2)	안성시	안성죽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	1,438,008	(주)송백개발(주)서해종합건설	'16.10.	조성계획 협의중
	평택시	평택호	평택시 현덕면 관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2,743,000	평택시	'77.03.	'79.2.
경남 (2)	거제시	거제 남부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3,875	(주)경동건설	'19.5.	미수립
	창원시	창원 구산해양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2,634	창원시장	'11.04.	'15.03.
경북 (5)	경주시 (3)	보문	경주시 신평동, 보문동, 북군동, 천군동, 손곡동 일원	8,515,243	경북관광공사	'75.04.	'73.05.
		감포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대브리 일원	4,019,200	경북관광공사	'93.12.	'97.03.
		마우나오션	경주시양남면신대리산140-1번지 일원	6,419,256	(주)엠오디	'94.03.	'94.05.
	김천시	김천 온천	김천시 부항면 안간파천리 일원	1,424,423	(주)우촌개발	'96.03.	'97.12.
	안동시	안동문화	안동시 성곡동 일원	1,655,181	경북관광공사	'03.12.	'05.04.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219번지 일원	2,736,21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01.	'07.04.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동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대브리 일원	3,662,725	부산도시공사	'05.03.	'06.04.
울산	북구	강동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68,939	울산 북구	'09.11.	'14.12.
인천	강화군	강화종합리조트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 281-2번지 일원	645,225	(주)해강개발	'12.07.	'12.07.
전남 (6)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57,970	동호(주)	'09.02.	'09.05.
		여수 화양	여주시 화양면 장수, 안포리 일원	9,989,691	(주)일상	'03.10.	'06.05.
		여수경도 해양	여주시 경호동 일원	2,127,189	전남개발공사	'09.12.	'09.12.
		여수첼린지파크	전남 여주시 화양면 나진리 산333-2번지 일원	510,000	여수첼린지파크관광(주)	'19.05.	'19.05.
	진도군	진도 대명리조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 일원	558,765	(주)대명레저산업	'16.12.	'16.12.
해남군	해남 오시아노	해남군 화원면 주광, 화봉리 일원	5,073,325	한국관광공사	'92.09.	'94.06.	
전북	남원시	드래곤	전북 남원시 대산면 옥울리 산131 일원	795,133	신한레저주식회사	'18.09.	'18.09.
제주 (8)	서귀포시 (5)	중문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번지 일원	3,562,000	한국관광공사	'71.05.	'78.06.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747,536	(주)휘닉스제주 중앙	'06.01.	'06.01.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번지 일원	3,985,6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6.12.	'06.12.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	1,539,0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9.12.	'09.12.
		록인제주 체류형복합	서귀포시 표선면 가사리 622번지 일원	523,354	(주)록인제주	'13.12.	'13.12.
	제주시 (3)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70-11번지 일원	587,000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18.05.	'18.05.
		프로젝트 ECO	제주 제주시 봉성리 산 35번지 일원	698,000	(주)제주 대동	'18.05.	'18.05.
	신화련금수산장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원	866,000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	'19.03.	'19.03.	
충남 (2)	부여군	백제문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3,026,227	(주)호텔롯데	'15.01.	'15.01.
	천안시	골드힐카운티리조트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일원	1,691,643	(주)골드힐	'11.12.	'13.06.
충북	증평군	증평 에듀팜 특구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2,622,825	증평군수농어출공사, (주)블랙스톤	'17.12.	'17.12.
		45개		146,840,381			

○ 관광특구

(2020. 5월 기준)

지역	특구명	지정 지역(소재지)	면적(km ²)	지정일
서울(6)	명동.남대문.북창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9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송인동 4거리)	0.54	2006.03.30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강남	강남구 삼성동.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2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	1.08	2008.05.14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5)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83	2016.01.15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3.01	2019.4.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2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3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새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75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6.90	2007.09.28
경북(4)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포항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2.41	2019.8.12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3개 시.도 33개소		-	2,642.76	

▶▶ 2. 업종별 자금지원현황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중축·증설		
일반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국외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가족호텔업	○	○	○	○
호스텔업	○	○	○	○
소형호텔업	○	○	○	○
의료관광호텔업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
전문휴양업	○	○	○	○
종합휴양업	○	○	○	○
야영장업	○	○	○	○
관광공연장업	○	○	○	○
국제회의시설업	○	○	○	○
국제회의기획업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
카지노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	○	○	○
일반유원시설업	○	○	○	○
기타유원시설업	×	×	×	○
관광유희음식점업	×	×	○	×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	×	○	×
관광식당업	○	○	○	○
관광순환버스업	×	○	○	○
관광펜션업	○	○	○	○
관광캐도업	×	○	○	×
한옥체험업	×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	○
보세판매장	×	○	○	○
사후면세점	×	×	×	○
관광사진업	×	×	×	○
관광유람선업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
호텔리츠	○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조건	×	○	○	×
자동차대여사업	×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	○